영종에테르자이르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동 1696-1번지 (영종하늘도시 A18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층, 5개동, 총 4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6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총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주택형	84A	84B	84C	84D	107A	計
전체 세대수	161	118	60	19	80	438
경제자유구역 배정세대수	16	11	6	1	8	42
예비 세대수	80	55	30	5	40	210

※ 표기 : 당첨예정자 / 예비대상자

당첨예정자 : 관계기관의 장이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예비대상자 : 관계기관의 장이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사업주체에게 특별공급 사전접수한 자로서 관계기관의장이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 분	분양일정	비고
특별공급 신청	2026.12.01 (화) ~ 2026.12.03 (목) 10:00~16:00	• 접수처 : 영종에테르자이르네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3092-1번지)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불가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12.21 (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9:00~17:30) •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6.12.29 (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현재 입주자모집 승인 전으로 공급금액 및 분양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승인일에 따라 분양일정(특별공급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 재안내 예정)
- 본 청약안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06.15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청약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종에테르자이르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신청자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기준 」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기업 또는 기관에 1년이상 종사하는 자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통장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주체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일정

구 분	분양일정	비고
특별공급 신청	2026.12.01 (화) ~ 2026.12.03 (목) 10:00~16:00	• 접수처 : 영종에테르자이르네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3092-1번지)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불가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12.21 (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09:00~17:30) •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
당첨자 발표	2026.12.30 (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추천,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본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사업주체에게 특별공급 사전접수한 자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신청한 자
  - 당첨예정자 : 관계기관의 장이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관계기관의 장이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당기업에 장기근속(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근무)한 자
  3. 공고일 기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자
  4. 주민등록법상 인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자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아래사항에서 정하는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항	
공통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청약통장가입 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사실 확인서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 "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 " 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사전 접수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해당 기간 내 방문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 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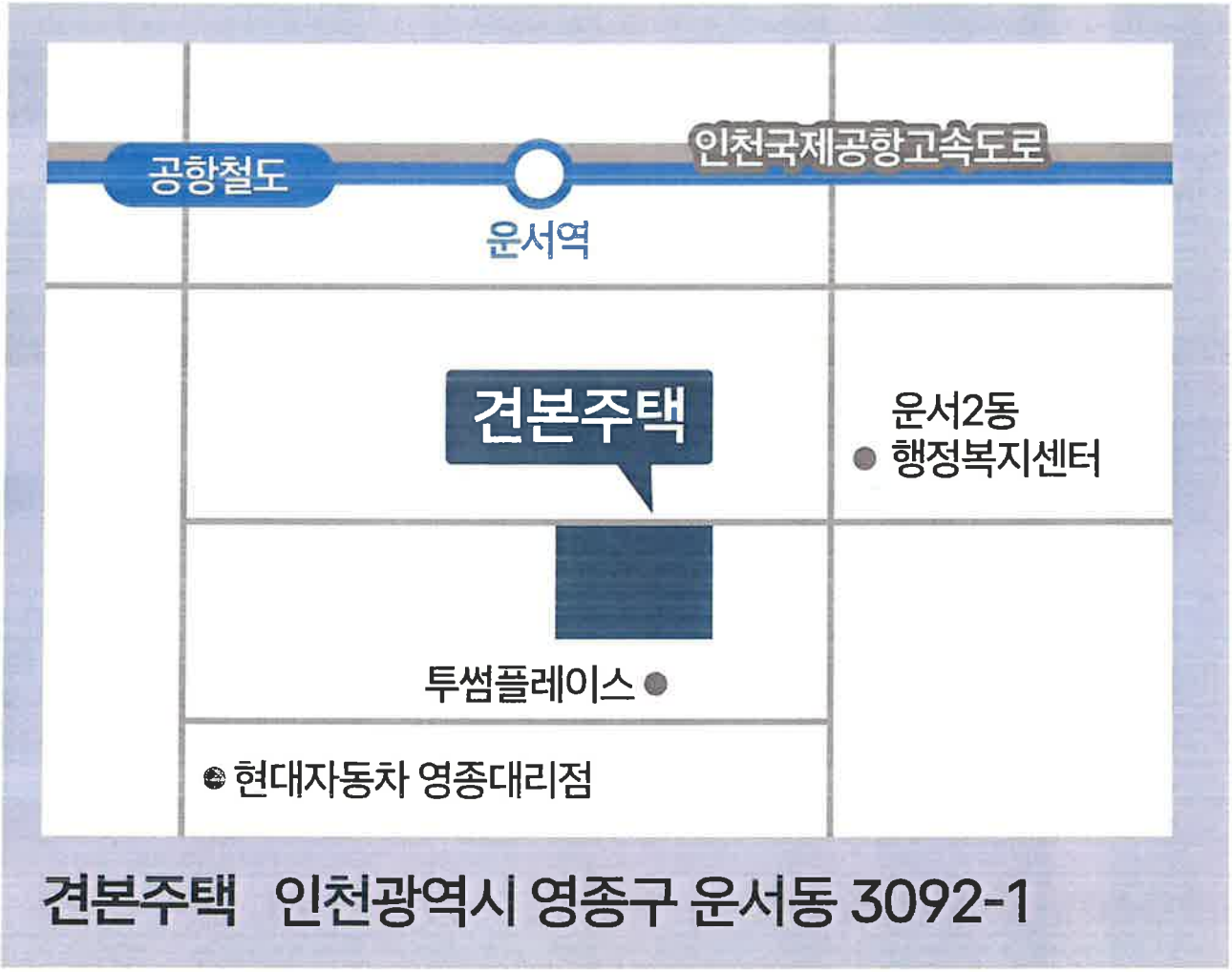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입주자선정일(동·호수 추첨 및 계약)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주택은 계약취소가 됩니다.
- 신청자의 타 지역으로 발령(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미 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종전 근무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외국인 투자 A기업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 B기업에서 8개월 근무 → B기업 근무 기간만 인정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된 자료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 안내문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본 안내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되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견본주택 위치도 및 분양문의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3092-1

현장 주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동 1695-1 (영종하늘도시 A18블록)
분양문의	1551-4852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 위탁자 창해건설 CHANGHAE CONSTRUCTION 시공사 자이 S&D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연 락 처	자택 : ( ) - , 휴대폰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주소			☎( ) -
근 무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	비 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동 1695-1 (영종하늘도시 A18블록)	□ 84.7256A ㎡ □ 84.9468B ㎡ □ 84.7448C ㎡ □ 84.8561D ㎡ □ 107.9914A ㎡	분양

4. 첨부서류

공통서류	내국인	외국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2. 사업자등록증 ( )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 ) 5. 재직증명서 ( )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7. 특별공급신청서 ( ) 8. 무주택서약서 ( )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1. 신분증 ( ) 2. 인감증명서 ( )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 )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 ) 5.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 에 한함)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 7. 가족관계증명서 ( )	1. 외국인등록증 ( )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 )

※ 해당사항에 괄호 안에 "O"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영종에테르자이르네		
성 명	(인)	신청주택형	☐ 84A ☐ 84B ☐ 84C ☐ 84D ☐ 107A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 12. 09.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_____(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 _____(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